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간주예산  
1차 총액과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9,380,763,196	281,422,896
일	반 회 계	8,315,419,182	249,462,575
특	별 회 계	1,065,344,014	31,960,320
	기 타 특 별 회 계	1,065,344,014	31,960,320
	농 어 촌 주 택 사 업	4,409,502	132,285
	의 료 급 여 기 금	631,349,473	18,940,484
	동 부 권	36,043,732	1,081,312
	학 교 용 지 부 담 금	7,944,338	238,330
	소 방	384,998,249	11,549,947
	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	598,720	17,96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46,835,018천원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292,8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